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77호 2021. 10. 05.(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825호 정선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826호 정선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8

○ 정선군 조례 제2827호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13

○ 정선군 조례 제2828호 정선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35

○ 정선군 조례 제2829호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45

○ 정선군 조례 제2830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49

○ 정선군 조례 제2831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53

○ 정선군 조례 제2832호 정선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67

○ 정선군 조례 제2833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70

○ 정선군 조례 제2834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74

○ 정선군 조례 제2835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85

○ 정선군 조례 제2836호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88

○ 정선군 조례 제2837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92

○ 정선군 조례 제2838호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94

○ 정선군 조례 제2839호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98

○ 정선군 조례 제2840호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04

○ 정선군 조례 제2841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09

○ 정선군 조례 제2842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111

○ 정선군 조례 제2843호 정선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113

○ 정선군 조례 제2844호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118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60호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123

○ 정선군 규칙 제1361호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12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8.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25호

정선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학술조사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3.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단체(20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관람객 인솔자

14. 폐광지역(군을 포함하여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의 해당 지역을 말한다)주민.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15.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조(「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개인사용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람료 및 면제) ① (생 략)	제10조(관람료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어린이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이경우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유공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3.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법령에서 무료 관람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학술조사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7.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단체(20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관람객 인솔자
8. 폐광지역(군을 포함하여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의 해당 지역을 말한다)주민.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학술조사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3.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단체(20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관람객 인솔자
14. 폐광지역(군을 포함하여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의 해당 지역을 말한다)주민.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

	에 한정한다. 15.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②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 할 수 있다. 1. ~ 11. (생 략) <신 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1. ~ 11. (현행과 같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개인사용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 상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안 제1조, 안 제2조)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8.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26호

정선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를 “체결해야”로 한다.

제2조(「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의 개정)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체결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협약을 체결”을 “체결”로 한다.

제3조(「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중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4조(「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체결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협약을 체결”을 “체결”로 한다.

제5조(「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협약체결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23조(협약체결 및 취소 등) ① ---------- ---------- ---------- ---------- 체결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탁·수탁 협약) 제11조 규정에 의한 요양원을 위탁운영관리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 하여 공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수탁 협약) -------- ---------- ---------- ---------- ---- 체결---------- ---------- ----------.

제3조(「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위탁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센터의 수탁자와 위탁기관,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위탁협약 체결) ---------- 체결하여야 ----------.

제4조(「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수탁 협약) 제7조에 따른 작업장을 위탁운영 관리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위·수탁 협약) ---------- 체결----------

제5조(「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탁의 협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 계약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 제>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조 ~ 안 제5조)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8.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27호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문장·휘장·철인: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꽃·나무·새: 별표 4
5.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별표 5
6. 정선군 전용서체: 별표 6
7. 군민의 노래: 별표 7

제3조(상징물의 변경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상징물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기) ①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군기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6조(문장 및 철인)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인가증, 군 소유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7조(휘장) ①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휘장수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산물 및 공산품 포장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2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용 승인(변경)신청이 처리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선군 상징물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제2조 각 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이 공익 목적상 필요로 신청하는 경우
2. 정선군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업을 군민 등이 실시하는 경우
3. 정선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전시·판매하고자 군민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상징물을 지역의 발전과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 관련 심의) 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군 상징물의 제정·추가·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사용권자 선정과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징물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04654호 정선군기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군 기

1. 정 기



2. 약 기



[제작방법]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길이 120㎝. 너비 1350㎝로 한다.
2. 군기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약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문 장





Dynamic Blue
역동성, 젊음을 상징하는 청색은 정선군에서
즐기는 다양함과 특별함, 열정 가득한 경험을 의미



Elegant Purple
고급스러운 풍부함을 품고 있는 보라색은 자연, 전통문화,
레포츠 등 정선의 아름답고 풍부한 관광자원 의미



Eco Green
대표적 well-being color인 녹색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선군의 천혜의 청정자연 의미



Vivid Orange
밝고 따뜻한 생동감의 주황색은 긍정적이며, 친절한
정선군민의 화합과 행복 표현

휘 장



철 인



[별표 2]

정선군 심벌마크

1. 심 벌 마 크



2. 설 명

전통 질그릇 형태 속에 정선군을 상징하는 주요 요소가 심장박동 리듬에 맞추듯 담겨있는 형상을 통해 '가슴 뛰는 정선을 담다' 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정선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관광자원, 사람과 열정이 한데 모여 가슴뛰고 희망찬 정선을 만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3. 부분별해설



[별표 3]

정선군 캐릭터

1. 산 아 리



가. 설 명

푸른 산과 오염되지 않은 계곡, 아리랑을 친근하고 개성있게 시각화하였으며, 대군민 고지사항, 계몽활동 등 구체적 메시지를 보다 친밀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보조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용

나. 이름설명(산아리)

정선군의 맑고 푸른 산, 정선군민의 순후한 인심과 삶의 애환을 노래한 정선아리랑의 아리를 함축하여 산아리라고 하였으며, 맑은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 삶이 주는 고단함을 아라리 가락에 실어 보내며 아름답게 살아가려는 정선사람들의 아름답고 순박한 삶을 의미함.

2. 아리랑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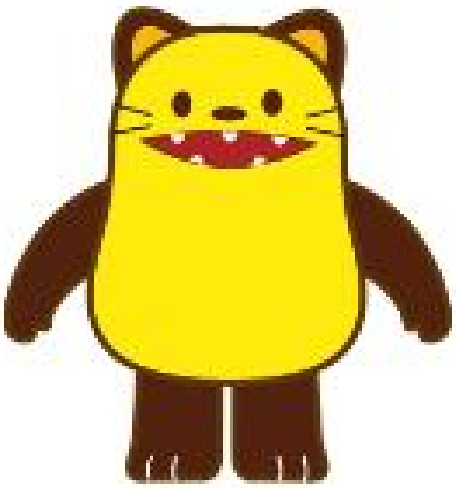


가. 설 명

기존 아리랑의 이미지를 반영하면서 정선아리랑의 춤사위와 소리를 색감으로 연상되도록 디자인. 정선의 산자락과 강줄기를 아리랑 가락으로 형상화하여 아리랑의 희노애락을 상징

3. 여행 캐릭터

가. 와 와 군





○ 아라리숲을 지키는 요정
입을 조금 벌리며 베시시 미소 짓는 표정을 가지고 있다.
와와군은 친구들을 아이콘으로 만들어 마법을 부린다.

나. 다 도





○ 도도리 형상을 한 다람쥐
겁이 많고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특성을 지닌다.
하늘에서 도토리 비를 내리게 하는 마법 아이템

다. 미 토



○ 동강 할미꽃을 사랑한 토끼
귀여운 모습과 다르게 동강할미꽃처럼 강인한 성격이다,
상대방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마법 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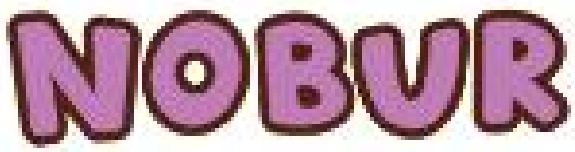
라. 강 새



○ 채식주의자로 새싹만 먹고 사는 새싹 강아지
발랄하고 능청스럽다.
썰렁한 농담으로 주위를 급속히 냉동시키는 마법 아이템

마. 노 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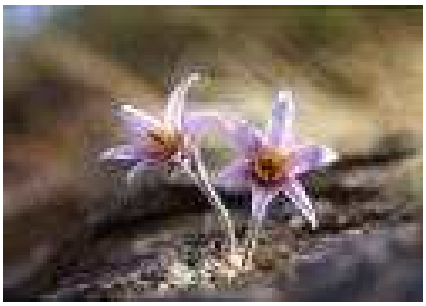




○ 버섯을 따라 아라리 숲으로 들어온 천진난만한 병아리
와와군의 머리나 등에 붙어다니길 좋아한다.
치명적인 졸림을 선물하고 은폐하는 마법 아이템

[별표 4]

정선군 자연상징물



1. 꽃 : 동강할미꽃

거친 자연환경 등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함을 잃지 않는 정선인의 굳은 의지와 미래를 향한 열정을 나타냄.



2. 나무 : 생강(동박)나무

이른 봄이면 주변 산과 계곡에서 쉽게 접하는 친숙함과 화려하지 않지만 계절마다 그 색깔을 달리하는 다채로움이 정선군민의 순수함과 생동감을 상징



3. 새 : 황조롱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정선의 청정함과 신비로움을 상징

[별표 5]

정선군 브랜드슬로건

1. 브랜드 마크(Brand Mark)





○ 아리아리! 정선은 즐거움과 흥, 정선사람의 따뜻함을 의미하는 레드색상을 바탕으로 굽이굽이 흐르는 강과 산세의 자연형상과 흥에 겨운 아리랑 가락을 곡선으로 강조하여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룬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선을 표현

2. 여행 브랜드 마크(Brand Mark)



○ 보고싶다 정선아는 '정선' 을 사람의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개발한 정선여행 브랜드 슬로건이다.
보고싶다는 만나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느껴보고 싶다 등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별표 6]

정선군 전용서체

1. 전용서체(4개)
  가. 정선아리랑체 : 정선아리랑
  나. 정선동강체 : 정선동강
  다. 정선아리랑혼체 : 정선아리랑혼
  라. 정선아리랑뿌리체 : 정선아리랑뿌리

2. 설 명
  정선서체는 강직한 선비정신과 단아한 여백을 담고 있으며 조형적으로는 한옥의 열림과 기와의 곡선미를 표현하였음. 또한 이름으로는 정선의 대표적인 '아리랑'과 '동강'을 응용한 정선서체는 우리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언어인 한글의 문화적 자긍심을 더욱 드높임.

  가. 정선아리랑체
  정선아리랑체는 힘이 있고 날카로은 느낌의 글자를 표현하였으며, '아리랑 역사의 자존심'을 이야기하고 있음. 서체에 기울기를 주어 정선아리랑의 비전과 희망을 생동감 있는 표정으로 담음. 또한 굵은 획과 얇은 획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서로 소통하며, 강약의 리듬성을 통하여 변화롭고 매력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음.

  나. 정선동강체
  정선동강체는 정선의 아름다운 '기암절벽'의 형태에서 느낄 수 있는 강인함과 '동강할미꽃'의 강인함 속 여린 꽃의 곡선 형태를 그래픽 모티브로 제작된 서체임.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통하여 역동적이고 리듬감 있는 정선의 희망찬 미래를 표현함.

  다. 정선아리랑혼체
  정선아리랑혼체는 네모틀에 채워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안정감, 편안함과 무게감을 통해 서체 활용이 용이함. 획의 굵기 대비를 통하여 아리랑의 애한과 그 속에 담긴 희망의 아름다움을 고딕형태에서 더욱 리듬감 있게 표현한 글자임.

  라. 정선아리랑뿌리체
  정선아리랑뿌리체는 네모틀의 구조안에서도 자소 형태에 변화를 주어 리듬감을 형성하고 특히 종성 'ㄴ'에서의 형태 변화로 마치 춤사위에서 느껴지는 한국적인 선의 느낌을 주는 서체임.

[별표 7]

정선군민의 노래

작 사 김 한
작 곡 최영섭

하나되어 즐겁게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단체명)	
	대표자(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선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정선군상징물사용승인서

○ 단체·업체명 : (대표자 :)

○ 주 소 :

○ 사용상징물 :

○ 사 용 기 간 :

○ 사 용 목 적 :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선군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번호	수여일자	국적	성명	주소	수여사유

□ 제안이유

가.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의 상징물 종류를 재정비하여 「정선군기조례」와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로 이원화되어있는 상징물을「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나.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징물은 조례로 통합 포함하고, 관리 필요성이 소멸된 상징물은 삭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통합관리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나. 상징물의 종류 변경 (안 제2조)

다. 상징물의 사용료 면제 규정 추가 (안 제10조)

라. 상징물의 관련 심의 위원회 내용 수정 (안 제3조, 제11조)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8. 27.)에서 의결된 정선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28호

정선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군 관할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2.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해야 한다.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 할때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을 제3호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직에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7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군 관할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2.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해야 한다.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 할때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을 제3호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직에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신 설>	제17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비영리민간단체 추천용)

<table>
<tr><td>성 명</td><td>(한글)</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td></tr>
<tr><td>주소 또는 거소</td><td colspan="5">우편번호( )</td></tr>
<tr><td>E - mail</td><td colspan="5"></td></tr>
<tr><td>직 업</td><td colspan="5">※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2">전화번호</td><td colspan="3">자 택 :</td><td colspan="2">직 장 :</td></tr>
<tr><td colspan="5">휴대전화 :</td></tr>
<tr><td>개인정보취급동의</td><td colspan="5">「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3">추 천 자</td><td>단 체 명</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td></tr>
<tr><td>비영리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d>등 록 일</td><td></td></tr>
<tr><td>추 천 사 유</td><td colspan="4"></td></tr>
</table>

위 사람을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 단체명 : (직인)
대표자 성명 : (인)
추천 대상자 : (서명또는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읍면장 추천용)

<table>
<tr><td>성 명</td><td>(한글)</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td></tr>
<tr><td>주소 또는 거소</td><td colspan="5">우편번호( )</td></tr>
<tr><td>E - mail</td><td colspan="5"></td></tr>
<tr><td>직 업</td><td colspan="5">※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2">전화번호</td><td colspan="3">자 택 :</td><td colspan="2">직 장 :</td></tr>
<tr><td colspan="5">휴대전화 :</td></tr>
<tr><td>개인정보취급동의</td><td colspan="5">「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2">추 천 자</td><td>읍·면 명칭</td><td colspan="4"></td></tr>
<tr><td>추 천 사 유</td><td colspan="4"></td></tr>
</table>

위 사람을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직인)

추천대상자 : (서명또는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공개모집 신청용)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성별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				
E - mail					
직 업	※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자 택 :		직 장 :		
	휴대전화 :				
개인정보취급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기 타	(행정·예산관련 경력을 기재)				

위 본인은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제안이유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근거와 명확화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안 제10조)

나. 위원회 구성 (안 제11조)

다. 위원의 임기 (안 제12조)

라. 위원의 해촉 (안 제13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 (안 제14조 ~ 제18조)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8.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29호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의회”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선군의회의원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3년 이상 이거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 일비의 금액란 “금100,000원(금일십만원)”을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제13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금 액	비고
일비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군의원이 아닌 위원은 군의원에 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 ----------.
<신 설>	1. 정선군의회의원
<신 설>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신 설>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신 설>	4.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3년 이상 이거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정함(안 제3조)

1) 정선군의회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3년 이상 이거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상향 조정(안 별표)

1) 수당 : 1일 100,000원 → 150,000원

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8.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30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 ---------- ----------. -------- ---------- ---------- ----------.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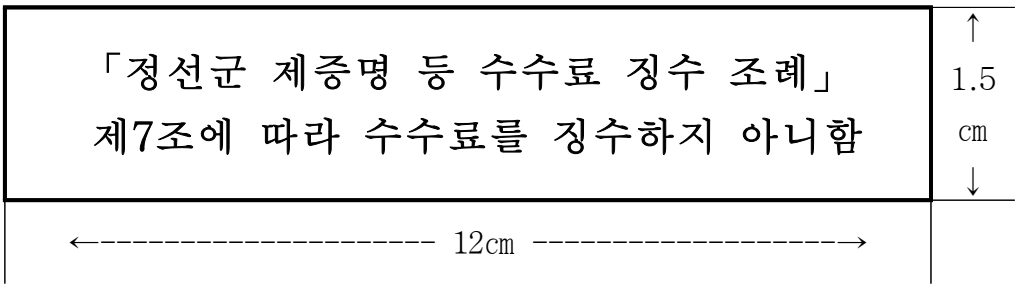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준	금액	비고	구분	기준	금액	비고
○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1건	1건3,000원		<삭제>	삭제	삭제	
○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	1건	1건2,000원		<삭제>	삭제	삭제	
○ 낚시터업 허가·등록 지위승계 신고	1건	1건3,000원		<삭제>	삭제	삭제	
○ 관상어 양식업 신고	1건	1건1,000원		<삭제>	삭제	삭제	
○ 생략				○(현행과 같음)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3]

고무인(제7조 관련)



□ 제안이유

개별법령의 제·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신설 또는 삭제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에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별표 1] 개별법령에 수수료 변경사항 반영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1건	3,000원	삭제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	1건	2,000원	삭제
낚시터업 허가·등록 지위승계 신고	1건	3,000원	삭제
관상어 양식업 신고	1건	1,000원	삭제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규정에 이중으로 규정된 [별표 2] 삭제

다. 수수료 감면대상자 감면 고무인 날인규정 [별표 3] 신설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8.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31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상점가”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상점가”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상점가에서”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를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정관의”를 “정관을”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 및 제20조”를 “법 제11조·제11조의2 및 제20조”로, “상점가”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상점가”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상점가”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10장(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제3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40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에 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1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11장(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

제43조(청년상인의 기준) 영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으로,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44조(청년상인의 육성) ① 군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청년상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청년상인의 경

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조성사업 등 창업 육성 사업을 통해 일정한 요건 심사를 통과하여 창업한 자에 한한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군수가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지원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상인은 창업 목적, 세부 소요예산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 상점가·골목형상점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 ---------- 상점가·골목형상점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	7. ----------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

현 행	개 정 안
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21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제21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골목형상점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생 략)	제22조(상인회 정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정관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	제31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제11조의2 및 제20조----------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현 행	개 정 안
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33조(위탁관리) ① ---------- 상점가·골목형상점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4조(수탁자의 의무) ① ---------- 상점가·골목형상점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원 제3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40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

현 행	개 정 안
	(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 설>	제41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신 설>	제4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

현 행	개 정 안
	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 설>	제11장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
<신 설>	제43조(청년상인의 기준) 영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으로,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44조(청년상인의 육성) ① 군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청년상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청년상인의 경우 중소벤체기업부의 청년몰 조성사업 등 창업 육성사업을 통해 일정한 요건 심사를 통과하여 창업한 자에 한한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 행	개 정 안
	3.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① 군수가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지원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상인은 창업 목적, 세부 소요예산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 점 가 명 :

2. 대 표 자 성 명 :

3. 소 재 지 :

4. 면적/점포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0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 제안이유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강원도로부터 자치법규(안)이 시달되어「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골목형상점가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제9항)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 조항 신설 (안 제39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40조)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41조)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8.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32호

정선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 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 계획
6.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
7. 교육비 수입·지출계획서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등)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에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 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수탁자의 교육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교육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8.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33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1대대장”을 “2대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군사안보 지원부대 정선지역 관계관
제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1대대”를 각각 “2대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1대대 책임”을 “2대대 책임”으로, “1대대 동원과장”을 “2대대 동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군수는”을 “군수는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등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으로, “비용을”을 “비용을 「예비군법」,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육군 제8087부대 1대대장	4. ---------- 2대대장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제7안보지원대 정선군 관계관	7. 군사안보 지원부대 정선지역 관계관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② (생략)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작전과장	3. ---------- 2대대 -------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동원과장	4. ---------- - 2대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② (생 략) ③ 합동상황실은 정선군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책임 하에 운영하고,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동원과장으로 하며, 반원은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9.11.15.>	제9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2대대 책임 ---------- 2대대 동원과장----------. ----------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등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 비용을 「예비군법」,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 ----

□ 제안이유

가. 우리 지역 주둔 군부대 해체 및 임무 전환으로 책임부대 조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을 변경하고자 함.

나.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지원 실효성을 구체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 위원 변경 (안 제3조)

나. 예산지원 근거법령 추가 (안 제10조)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8.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34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6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별표 8 제1호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거리밖에 있는 대지”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거리밖에 있는 대지”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거리밖에 있는 대지”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거리”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1호가목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거리 밖”을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거리”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26 단서 중 “10호”를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 제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할 경우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 ---------- -------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제7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 법 제28조제5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회의운영) ① ~ ⑥ (생 략)	제60조(회의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별표 8]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6호 관련)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을 제외한다)

[별표 9] <개정 2016.10.20. , 2016.12.30.>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7호 관련)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16.10.20.>

[별표 10] <개정 2016.6.9.,2016.10.20.,2016.12.30.>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8호 관련)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6.6.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16.10.20.>

[별표 11] <개정 2016.12.3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9호 관련)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2] <개정 2016.10.20.,2016.12.3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0호 관련)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16.10.20.>

[별표 26] <개정 2016.12.30., 2019.06.26>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31조제2항 관련)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부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 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골지천, 임계천, 송현천, 송천, 봉산천, 오대천, 어천, 용탄천, 지장천, 석항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및 개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개정 및 정부합동평가 대비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사항에 대하여 「정선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원인 권익보호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6조)

민원 서류의 미 보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 근거 없이 민원 신청을 취하한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음에, 관련 조문 삭제

나. 군계획위원회 안건 배부 기간 명시 (안 제60조)

군계획위원회 운영 시 사전에 안건이 배부되지 않거나 충분한 기한 전에 배부되지 않는 경우 사전 검토 미비로 회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사전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배부 근거 규정 마련

다. 별표 개정 (안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12)

준주거 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 지역에 대하여 숙박시설(일반, 생활형) 및 위락시설의 입지 시 주거지역과 이격 거리 산정 명확화

라. 별표 개정 (안 별표 26)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예외 규정의 10호 이상 자연마을 적용기준 명확화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8.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35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대 농업기계 중 운반대상 농업기계를 직접 운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대료 등) ①·② (생 략)	제9조(임대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대한 농업기계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삭 제>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임대 농업기계 중 운반대상 농업기계를 직접 운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2.·3. (생 략)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영농철 임대 농기계를 영농 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개정하여, 임대 농기계 이용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 주요내용

농업기계의 임대료 감면 (안 제10조제1항제2호)

- 임대 농업기계를 임차인이 직접 운송에 따른 임대료 감면: 50퍼센트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8.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36호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선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으로”를 “금연지도원”으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공개모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 위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금연지도원의 공개모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 위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정선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 ---------- 금연지도원 ---------- ---------- ---------- ---------- ---------- ---------- 군수----------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정선군수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297㎜[백상지 80g/㎡]

□ 제안이유

금연지도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 및 심사 절차 의무화와 이에 따른 절차가 마련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금연지도원 위촉 공모 및 심사절차 의무화(안 제3조) 신설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8.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37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 ① ---------- ---------- ---------- ---------- 5만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지자체 간의 과태료 편차로 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으로 과태료 권고 수준인 5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금연구역 흡연에 따른 과태료를 5만원으로 변경 (안 제10조)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에서 의결된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38호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로서 정선군의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시설물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관리 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에 기초한 지역주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마을단체 및 마을법인

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사용료
4. 시설물 관리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갱신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5. 수탁자는 수탁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배상책임)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시설물의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운영비"라 한다)는 수탁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예산관리 · 공유재산관리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나. 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위탁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위탁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한 것으로 본다.

□ 제안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3조)

나. 시설물 관리·운영 및 관리위탁 (안 제4조 ~ 제8조)

다. 시설물 운영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라. 시설물 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마.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1조 ~ 제12조)

바. 지도 감독 (안 제13조)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에서 의결된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39호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를 “정선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의 지원”으로 한다.
제2조 중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정선군”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군수”이”를 “ “군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를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사무 지원 및 준용)”을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경비 지원의”를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으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을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사업
9. 협의회 운영비
10.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 제목 “(인력 등 지원)”을 “(행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으로, “없으면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을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정선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의 지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정선군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 “군수” ---------- ----------

현 행	개 정 안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사업 9. 협의회 운영비

현 행	개 정 안
	10.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정 지원) ---------- ---------- ---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 ---.

□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의 경비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선군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 경비지원 규정 (안 제4조)

나. 기타 법령조문 및 띄어쓰기 정비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에서 의결된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40호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3.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의 접수·처리를 지원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읍·면출장소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장비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위탁)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일부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지원기준(제7조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원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5조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법률상담	제5조제2호	정선군 고문변호사 연계 등	
의료비	제5조제3호	50만원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제5조제4호	심적 고충 등을 고려하여 민원발생 당일 필요 시간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5호	5일 이내	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그 밖의 사항	제5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table>
<tr><td>발 생 일</td><td></td><td>부 서 명</td><td></td></tr>
<tr><td>피해 공무원</td><td>○ 직급(위):
○ 성 명:</td><td>연 락 처</td><td></td></tr>
<tr><td>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td><td colspan="3">○
○
○</td></tr>
<tr><td>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td><td colspan="3">○
○
○</td></tr>
<tr><td>지원 신청
내용</td><td colspan="3">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table><tr><td>은행명</td><td>(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td><td>계좌번호</td><td>(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td></tr></table>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td></tr>
<tr><td>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td><td colspan="3">○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td></tr>
</table>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중

□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정선군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안 제5조)
마. 안전시설·장비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안 제6조)
바. 재정 지원 및 위탁 (안 제7조 및 제8조)
사. 지원신청 방법 (안 제9조)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에서 의결된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41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이하 “참전공로수당”이라 한다)으로 매월 15만원 지급 2. ~ 5. (생 략)	제4조(지원사업) ---------- ---------- ---------- ----------. 1. ---------- ---------- - 20만원 --- 2. ~ 5.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의 참전공로수당 인상 지원을 통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인상 지급 (안 제4조)

- 당초 : 월 15만원 → 변경 : 월 20만원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에서 의결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42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15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20만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의 호국보훈수당 인상 지원을 통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호국보훈수당 인상 지급 (안 제9조)

- 당초 : 월 15만원 → 변경 : 월 20만원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에서 의결된 정선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43호

정선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정선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정선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기반시설·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5.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에서 수립·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3.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공동체 조성
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건강증진) 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2.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3. 우울증, 자살 등 정신보건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포상)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과 군민 모두가 더불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체계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기본이념 (안 제1조 ~ 제3조)

나.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다.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라. 고령친화도시 계획 수립, 시행계획 실시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6조 ~ 제8조)

마.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안 제9조 ~ 제15조)

바.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 (안 제16조 ~ 제17조)

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8조 및 제19조)

제275회 정선군의회(2021. 9. 14.)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에서 의결된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44호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정선군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최고기온이 35.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한다.
5. “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저감시설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4. 무더위쉼터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예방사업) 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열섬 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권고 등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용품·식수·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사업
2. 냉방물품 보급사업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리·반장
2.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의 지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제3조 관련)

폭염저감시설	정 의
쿨 루 프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와 방사효과가 있는 밝은 색 도료를 지붕 또는 옥상에 시공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열을 저감시켜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여름철 냉방기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도시온도 저감 기법을 말한다.
쿨링포그 시 스 템	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3~5℃ 낮춰주는 신개념 냉방장치를 말한다.
차 열 성 도로포장	태양열이 포장체에 흡수되지 않도록 차단 및 반사 성능이 우수한 재료를 포장체 내에 포함하거나 포장체 상면에 코팅하여 포장면의 열흡수를 방지하여 온도를 낮추는 포장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	주요 도로변 및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텐트를 설치하거나 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 도 나무그늘 만 들 기	폭염 시 도심 내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	일반적으로 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등이나, 벽천·생태연못과 같이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놀이형 놀이시설)	수돗물 등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녹색커튼	도시 건축물 외벽이나 창문에 녹색 식물을 심어 식물이 뜨거운 열기를 막아 여름철 건물 내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에어커튼	출입구 바로 위에서 강한 바람을 내려 보내 바깥의 더운 바람을 차단하는 설비를 말한다.
기타시설	상기의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안이유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염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 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폭염 저감 시설의 종류 (안 제3조)

다. 폭염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

라. 폭염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예방사업 (안 제6조 및 제7조)

마.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안 제8조)

바.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안 제9조 및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

규 칙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8.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60호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을 “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써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제3항 중 “서면심의”를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관련 업무 담당이”로, “소속 직원중에서 기획관이 지정한다”를 “법무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회의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의 경우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확정하여 조례안을 군의회와 기획관에게 이송하고, 기획관은”을 “확정하고, 기획관은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9.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9. (현행과 같음) 10.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써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회의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
제21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기획관이 지정한다. ② (생 략)	제21조(간사 등) ① ---------- 관련 업무 담당이 ----- 법무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가 개	제22조(회의록 등) ① ----------

현 행	개 정 안
최 될 때마다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회의록---------- ---------- ---------- ----------. 다만,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② 심의회 위원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의 경우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23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조례안을 군의회와 기획관에게 이송하고, 기획관은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 확정하고, 기획관은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서식】

조례·규칙 심의의결서

<table>
<tr><td>의안번호</td><td colspan="2"></td><td>의결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의 안 명</td><td colspan="5"></td></tr>
<tr><td>의결주문</td><td colspan="5"></td></tr>
<tr><td>의결이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심의내용</td><td rowspan="2">심의결과</td><td colspan="4">심의 세부 내역(명)</td></tr>
<tr><td>원안의결</td><td>수정의결</td><td>부 결</td><td>심의보류</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5"></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 rowspan="2">직 위</td><td rowspan="2">성 명</td><td colspan="4">서 명</td><td rowspan="2">의 견</td></tr>
<tr><td>원안의결</td><td>수정의결</td><td>부 결</td><td>심의보류</td></tr>
<tr><td>의 장</td><td>군 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부의장</td><td>부 군 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위 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제안이유

가. 코로나19 등 조례·규칙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내용을 포함.

나.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의 경우 회의록 작성 생략 등 자치법규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나. 전자심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서면심의에 전자심의 내용 포함 (안 제17조)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8.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61호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승인) ①「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조 각 호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하거나 행사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1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상징물의 사용계약)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자는 조례 제9조3항의 사용승인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징물 사용 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문장·휘장·철인 : 총무행정관

2. 심벌마크 : 기획관

3. 캐릭터 : 기획관, 여행캐릭터 : 문화관광과

4. 꽃·나무·새 : 총무행정관

5.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 총무행정관, 여행 브랜드슬로건 : 문화관광과

6. 정선군 전용서체 : 기획관

7. 군민의 노래 : 총무행정관

② 제1항의 관리부서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선군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상징물 사용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정선군이 소유한 상징물을 사용함에 있어, 정선군을 "갑"으로 사용자를 "을"로 하여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내용)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상징물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상징물부착의 제한) "을"은【별표】에 기재된 제품과 상징물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신 또는 타인이 제조, 배포, 판매, 선전, 광고하는 다른 제품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상징물 사용의 준수) "을"은 "갑"이 소유한 【별표】의 상징물 내용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시 변경신청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상징물 사용권을 바로 해지한다.

제5조(의제처리 금지)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징물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아니한다.

제6조(법적절차의 조력)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3자에게 상징물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소송 또는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갑"과 "을"은 상징물의 사용에 관계되는 법적절차의 수행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조력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금지) "을"은 이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양도는 당연히 계약 무효가 된다.

제8조(시제품 협의) "을"은 제조한 시제품에 대해 판매전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의견을 제품제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적인 감독권) ① "갑"은 제품의 품질향상, 신용유지,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이러한 조치나 감독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금액) 상징물 사용계약 보증금액 및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 보증금 : 금 원(₩ 원)

※ 계약 보증금 :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의 10%

2.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 : 총 출고 판매금액 원의 1%

제11조(사용료 납부 등) ① "을"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계약 보증금과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를 "갑"이 정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보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판매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 증명원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를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결산 후 1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출고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이 "갑"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사용료의 3%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경과 후에도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비용공제금지)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하한 종류의 제세공과금(각종 원천과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모든 제세와 부과금을 포함한다)이나 비용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계약의 해지·취소) ① "갑"과 "을" 쌍방은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 해지의 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 이 계약에 의한 해지는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지에 앞서 "을"의 채무의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징물의 사용중지) 이 계약의 종료나 기타 사유로 기한 전 해지시 "을"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와 함께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즉시 상징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5조(통지) 이 계약에 의거한 모든 통지사항과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한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년 월 일에 발효되고, 년 월 일에 종료된다.

② "을"이 "갑"에게 계약연장 신청을 위한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관할법원) ①이 계약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로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갑 (정선군수)	을(상징물사용자)
o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o 주소 :
o 대표 : 정선군수 (인)	o 대표 :

【별표】

상징물의 내용

1. 상징물 구분 :

2. 상징물 사용 물품(제품)지정 :

3. 상징물의 형상

【형상 1】

【형상 2】

【형상 4】

【형상 5】

【형상 5】

【형상 6】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상징물 사용승인대장

□ 관리부서:

□ 상징물의 종류:

승인번호	승인년월일	인적사항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기간	비고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 제안이유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사용계약 (안 제4조)

나. 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안 제5조)